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·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50 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서미화・용혜인・김영환

신장식 · 정성호 · 박정현

양문석 • 전진숙 • 허성무
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, 투표소 접근 편의,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의 제작·사용,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 음.

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 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 정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 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(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).
- 나.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 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·제출하도록 함(안 제65조제4항).
- 다.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·사용하도록 함(안 제151조제9항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5조제4항 본문 중 "1종을"을 "1종과 발달장애선거인(선거인으로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(이하 "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"라 한다) 1종을"로, "작성할 수 있다"를 "각각 작성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점자형 선거공보"를 "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"로, "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"를 "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불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각각 대신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

제6항제1호가목 중 "점자형 선거공보"를 "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시각장애선거인"을 "시각장애선거인"을 "시각장애선거인·발달장애선거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부분 전단 중 "점자형 선거공보"를 "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선거공보"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"점자형 선거공보"를 "점자형선거공보"를 "점자형선거공보"를 "점자형선거공보"를 "점자형선거공보"를 합의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선거공보"로 한다.

제66조제8항 후단 중 ""점자형 선거공보"는 "점자형 선거공약서"로 보며, 점자형 선거공약서는"을 ""점자형 선거공보"는 "점자형 선거공약서 선거공약 선거공약 선거공보"는 "발달장애인용 선거공약서"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와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"으로 한다.

제1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편리한 곳에"를 "편리한 곳으로서 승강기·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"로 한다.

제147조(투표소의 설치)

제148조제4항 중 "제147조제3항부터"를 "제147조제2항부터"로 한다. 제1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所屬政黨名 및 姓名"을 "소속 정당명(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·성명 및 사진"으로

한다.

제150조(투표용지의 정당・후보자의 게재순위 등)

제15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·사용하여야 한다.
- ⑨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 표보조용구를 제작·사용하여야 한다.

제26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점자형 선거공보"를 "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"로 한다.

1의2.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	제6조의2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
람의 투표시간 보장) ①・②	람의 투표시간 보장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	③
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	
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	
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	
까지 인터넷 홈페이지, 사보,	
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	
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고용된 사람 중</u>
	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
	장애의 유형・정도 및 특성을
	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
	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
	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
	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
	알려야 한다.
제18조(선거권이 없는 자) ① 선	제18조(선거권이 없는 자) ①
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	
권이 없다.	<u>.</u>
1.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	<u><삭 제>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 략) 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③ (생 략)

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(선거인으로서 「장애인 복지법 |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위한 선거 공보(이하 "점자형 선거공보"라 한다)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 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. 다 만, 대통령선거 · 지역구국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 · 제출하여야 하되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(2)·(3) (현행과 같음)
∥65조(선거공보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4
1종과 발달장애선거인
(선거인으로서 「발달장애인
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
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위하
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
공보(이하 "발달장애인용 선거
<u> 공보"라 한다) 1종을</u>
<u>각각 작성할 수 있</u>
<u>다</u>
<u>점자형 선거</u>
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
<u>보</u>
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

- ⑤ (생략)
-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대통령선거
 - 가. 책자형 선거공보(점자형
 선거공보를 포함한다)
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

일 후 6일(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)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,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

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
를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
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출
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
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달장애
인용 선거공보를 각각 대신할
<u>수 있다</u> .
⑤ (현행과 같음)
6
1
가 <u>점자형</u>
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
<u>선거공보</u>

고,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 봉하여 발송한다.

나. (생 략)

- 2. (생략)
- ① 구·시·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<u>시각장애선거인</u>과 그 세대주의 성명·주소를 조 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 일까지 관할구·시·군선거관 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 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(점자형 선거 공보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따른 내용(이하 이 조에서 "후보자정보공개자료" 라 한다)을 그 둘째 면에 게재 하여야 하며, 후보자정보공개자 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

· 나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(T)
<u>시각장애선거인·</u>
발달장애선거인
8
<u>점자형 선</u>
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
<u>공보</u>

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,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 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 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- ⑨·⑩ (생 략)
- ①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 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 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・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(점자형 선 거공보를 포함한다)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・시・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하다.
- 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선거공보(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⑨·⑩ (현행과 같음)
①
점자형 선거공
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-
①
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
장애인용 선거공보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다)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,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 른 면(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 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 후보자정보공개자 료를 게재하거나,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 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 거나, 선거공보의 규격・제출기 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한다.

③・④ (생 략)

제66조(선거공약서) ① ~ ⑦ (생략)

⑧ 제64조제3항·제8항 및 제6 5조제4항(단서는 제외한다)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벽 보" 또는 "책자형 선거공보"는 "선거공약서"로, "작성하여 보 관 또는 제출할"은 "작성할"로, "점자형 선거공보"는 "점자형 선거공약서"로 보며, 점자형 선 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

· ⑬·⑭ (현행과 같음)
제66조(선거공약서) ① ~ ⑦ (현
행과 같음)
(8)
(-1) *2
"점자형 선거공보"는 "점자형
선거공약서"로, "발달장애인용
선거공보"는 "발달장애인용 선

종류로 본다.

- ⑨ (생략)
- <u>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</u> ① (생략)
 -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, 읍·면·동사무소 등 관공서, 공공기관·단체의 사무소, 주민 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. 다만,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③ ~ ① (생 략)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~ ③ (생 략)
 -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·사용협조, 설비,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.
 - ⑤・⑥ (생략)

거공약서"로 보며 점자형 선거
공약서와 발달장애인용 선거공
<u>보는</u> .
⑨ (현행과 같음)
제147조(투표소의 설치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편리한 곳으로서 승강기ㆍ경사
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노
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
한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
<u>있는 곳에</u>
,
③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제147조제2항부터</u>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第150條(投票用紙의 政黨・候補 者의 揭載順位 등)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・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"無所屬"으로 표시하고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항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⑩ (생 략)
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전 성) ① ~ ⑦ (생 략)

8 區・市・郡選舉管理委員會 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 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・사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0조(투표용지의 정당·후보
자의 게재순위 등) ①
<u>소속 정당명(소속</u>
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
의 표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
<u>항에서 같다)·성명 및 사진</u>
·
.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
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
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
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
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
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
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.

⑨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
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

⑨ (생략)
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) ① ~ ⑤ (생 략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

- ① · ② (생 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- 2. (생략)
- 3.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 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

3의2. ~ 5. (생략)

④ ~ ① (생 략)

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 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 구를 제작·사용하여야 한다. ① (현행 제9항과 같음)
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

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- ①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--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 애인용 선거공보-----

3의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② (현행과 같음)